

건강의 권리와 의무

法曹人의 位置에서



李炳勇

〈변호사·본회법률고문〉

사람이 한平生 健康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所望하는 것이고, 그 所望대로 누릴 수 있다면 큰 幸福이라 할 것이다, 그것을 구태여 健康의 權利 義務로 딱딱한 法律文言으로 따지기가 適合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個人 個人이各自 健康에 留意하고 維持할 수 있다면 구태여 健康에 관하여 權利와 義務라는 어마 어마한 表現에 까지 이르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健康이 어느 한 사람만의 힘만으로可能할 수가 없고 그가 살고 있는 社會集團 國家안에서 傳染病이 번진다면 公害의 要因으로 말미암아 健康이 威脅을 받게 되는 現代社會에 이르러서는 健康은 그사람 個人的 責任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넓리 社會나 國家가 관與하지 않을 수 없고 個人도 또한 社會나 國家에 대하여 어떤 利益이나 權利를 主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健康에 관하여 國民이 國家에 대하여 要求하는 것이 健康權이라 할 수 있고, 國家가 그러한 國民의 正當한 要求에 充足시켜주어야 하는

位置에서 健康의 義務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一. 憲法의 規定

大韓民國 政府가樹立되었던 1948년 7월 12일에 制定된 第一共和國 憲法 第20條(婚姻과 男女平等 婚姻의 純潔과 家族의 健康을 保護 받을 權利)로서 “婚姻은 男女同等權을 基本으로 하며 婚姻의 純潔과 家族의 健康은 國家의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고 規定하고 있어서 憲法의 明文上 健康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그後 1962년 12월 26일의 第三共和國 下의 舊憲法 第31條(婚姻의 純潔과 保健)로서 “모든 國民은 婚姻의 純潔과 保健에 關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고 規定의 表現이 바뀌어 져서 1972년 12월 27일 改正의 現行 維新憲法 第31條에서는 舊憲法의 條項이 그대로 規定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現行 憲法에서는 “健康”이라는 術語代身 “保健”이라는 말로 되었으나 “保健”이라는 말은 健康의 保存 또는 保護라는 말이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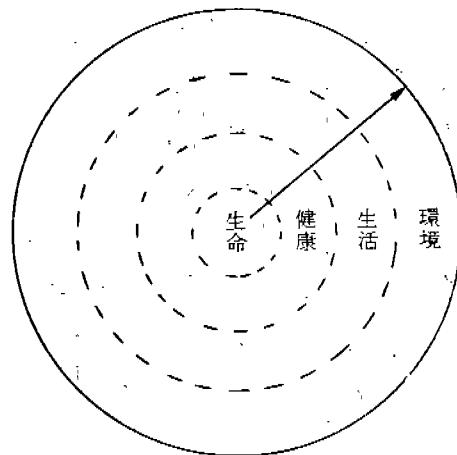
은 것으로 볼 때 憲法의 明文에서는 健康에 관하여 一貫하여 維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憲法 规定 自體가 國民에게 “健康權”이라는 權利를 認定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는 疑問의 餘地가 없지 않다. 즉 健康權의 權利性에 대하여는 論議의 餘地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現行 憲法이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라는 章下여서 위의 31條가 规定하고 있는 것이므로 뚜렷히 權利라고 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는 것은 國民이 國家에 대하여 保護를 要求할 수 있는 權利가 있다고 解釋하는 見解가 成立할 수 있다. 그러나 憲法에서 “身體의 自由” “居住 移轉의 自由” “職業選擇의 自由” “住民의 自由” 등 많은 自由는 모두 權利로서 뚜렷하게 認定하고 있고 “請願權”이나 “裁判請求權” “敎育權” “勤勞權”等 受益權에 관한 諸權利도 모두 權利性을充分히 認識할 수 있지만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는 것은 그와 같은 憲法上의 諸權利와는 规定의 體制上 相違한 바가 없어 적어도 憲法上 明文으로서는 權利性을 찾을 수 없고 다만 國家가 國民의 保健에 관하여 保護를 爲하여 活動하므로서 그 反射 利益을 받는데 그 친다고 보는 見解도 成立할 수 있다.

그러나 人間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基本이 되고前提가 되는 것은 人間으로서의 存立 生存이 아닐 수 없고, 生存은 健康을 維持하므로서 그 意義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또한 自由나 財產權도 健康한 生存을前提로 하여 可能하다 할 수 있으니 健康權은 文言의 體制如何에 不拘하고 널리 生存權의 概念에 包含시켜 생각하여 볼 수 있고, 또한 나아가 福祉國家의 理念에 비추어 보더라도 國家는 國民의 健康에 대하여 責任을 지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憲法下에서도 生存權 내지 健康權을 保障하

려는 趣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憲法의 條項이 당장 實效性 있는 條項으로는 볼 수 없고 宣言的 意味에 그칠뿐 다른立法를 기다려 具體的으로 權利性이 뚜렷하여 질 것으로 생각한다.



二. 健康에 관한 英國 法制

國民의 健康權에 관한 法則에 있어서 先進 英國의 制度는 크게 우리에게 參考가 되리라고 믿기기에 여기에 소개 하고자 한다. 英國에서는 醫療制度의 確立에 있어서 包括的醫療 (Comprehensive medicine) 또는 包括的保健看護 (Comprehensive health care)라는 概念을 定立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個人的 生命 健康의 保存으로부터 始作하여 家族 環境 地域社會 및 全國의 人 生活關係에 미치는 複雜한 綜合關係속에서 醫療 保健의 問題를 把握하고 있는 것이다.

英國에서는 產業革命의 進行에 따라서 發生한 社會의 混亂과 關聯하여 意識적으로 對策이 講究되었다. 그리하여 1848년의 公衆衛生法 (Public Health Act)의 制定을 보게 되었다. 이 時期에는 醫療의 技術의 發展도 幼稚하고 疾病의 治療關

<특집>

係의豫防도原則으로個人의責任에맡겨졌고制度的인規定이있더라도各地方의地方法에맡겨졌으며警察法的인性格에그치는것이었다.

다음으로1875년의公衆保健法(Public Health Act)의制定으로每年發生하는急性傳染病으로因하여人口의激減으로勞動力의危機에當面하여社會防衛의見地에서全國의制度로서의公衆衛生當局의樹立을보게된것이다.이러한制度의實現에는近代的후배니즘의精神이作用한것도事實이지만政治的原理로서는自由放任主義가支配한段階였기때문에傳染病豫防을위한最小限으로上下水道·污物處理등環境·衛生施設의實現에서그實證을찾아볼수가있다.

세번째段階로1936년의公衆保健法(Public Health Act)의制定으로이때에는二大潮流가形成되었다.하나는地方自治體를 중심으로하여행하여지는福祉·保健·教育과結合된Social Service라는觀念이다. Community는個個의自然人の生存을相互扶助의으로保障하여주는곳이라는觀念이臺頭하였다. 그러나이境遇에Community는外在的條件을整備하는데그치고個個人의健康에대한國家 또는公共團體의法的姿勢는個個人의健康의權利에대한國家의義務로서觀念이樹立되지는아니하였다.即慈惠의in社會政策의in奉仕라는程度에그쳤다. 둘째는勞動運動의展開와더불어1897년의勞動者災害補償法(Workmen's Compensation Act)또는1911년의國民保險法(National Insurance Act)과같이損害填補責任의分散과社會化를企圖한것이다. 이側面에서權利性을早期에樹立하여준것인데, 그러나이것은事後救濟의分野에속하는健康 그自體를直接으로保障한것은아니며, 따라서人間의生存에대한包括의保障의觀念은아직稀薄한것이라할수있다.

네번째段階는1946년의國民保健서비스法(National Health Service Act)의制定으로비로소包括의保健의觀念이確立되었다. 第一次大戰그後の大恐慌의經驗은人間의生存그自體에의配慮를社會의으로要求하기에이르렀고또한醫學藥學의發達과結合하여“豫防醫學”的觀念과더불어國民全體의健康을保全하는義務가國家 또는公共團體에부과되어야한다는意識이強調되어國家 또는公共團體의義務로認識되기에이르른것이다. 그리하여社會保險方式이優勢하게되었다.

그리하여끝으로英國에서는國營醫療를center으로하는段階가到來하게된다. 그것은健康에관한限·貧富의差異가發生하는것을不合理하다는觀點에서醫師의技術과治療資材가患者의必要에應하여無料로利用되어야할것이며治療와看護는社會의責任이라는觀念이成立하게되는것이다. 여기서國民保險을基盤으로하는것이아니고醫療國營의基盤위에서國民의權利로서의醫療給付請求와이에대한國家 또는公共團體의義務의觀念이더욱強化되기에이르른다.

三. 健康에관한우리의法的態度

우리나라에서의健康에대한法的態度를英國의그것과比較한다면아직도19世紀의in面이많다.健康의保全은個人의責任으로認定되는個人의生活面에서處理된다. 이것을法的次元에서살펴보면私的自治의原則이支配하는分野로看做되고있다. 따라서醫師와患者의法的關係는契約自由의原則이支配하고또한紛糾가發生하면醫療過誤라는形態로表現된다.或是刑事責任의有無의問題로서私的自治의限界가論議된다.法이이러한面에서

다루게 될 때 事後的 救濟法體系로서 表現된다.

豫防法體系로서 介在하는 境遇에도 그것은 例外的 法分野로서 社會防衛的 或은 警察法的 觀點에서 構成된다. 給付行政으로 보는 서비스도 權利=義務로서 보다는 慈惠의in 서비스=反射的 利益으로 認識되어 醫師=患者 關係에行政이 介入하는 境遇에도 醫師에 대한 規制로서 構成되는 것이므로 患者的 利益은 反射的 利益에 不過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英國에서와 같은 方向의 法的 姿勢를 要請할 수 있다고 할려면 從來의 健康에 대한 法的 態度를 크게 轉換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人間의 尊嚴, 人間의 生存을 위하여 여서는 疾病 發生前에 그 活動體인 個體의 健康保全을 위하여豫防의 의미가 增大하고 그것은 侵害防止行政과 서비스行政의複合性을 要求하게 된다. 그것은 또한 健康에 관한 全國的 包括의in 施策을 要請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法的인 把握은 어떻하든 第四次經濟開發五個年計劃이 始作된昨年부터 널리 醫療保險制度, 醫療保護制度의 實施를 보고 있으며 금년에는 그 制度의 定着化를 위하여 政府가 強

調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렇다고 3천 5백만 은 國民이 고루 지금 당장 醫療惠澤을 아무런 反對給付 없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英國에서의 國營醫療가 모든 國民의 保健을 擔保하는 것과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먼 앞날의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오늘의 狀況은 자꾸만 上昇하는 醫療酬價 때문에 都市에 있어서의 良質의 醫療는 事實上 特權層專屬 醫療機關化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는 點이다. 이것은 政府나 醫療機關이나 國民이 다같이 克服하여야 할 難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른 面으로 쪽은 돈으로 醫療保險에加入하고 醫療保險을 받게 된다면 또한 그範圍를 넓혀 가고 그 醫療의 質을 높혀 간다면 그다지 멀지 않은 將來에 모든 國民이 必要한 醫療의 受惠者로서 國民의 健康을 保全하는데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期待할 수도 있다.

國民의 健康의 保全은 그 個個人의 責任에서 社會國家의 責任으로 擴散하는 過程에서 우리는 明暗 雙曲線上에서 올바른 方向을 摸索하고 苦心中에 있다고 보여진다.

<13페이지에서 계속>

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보성의 의무」 규정이 있다.

4. 결론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보험법과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시혜 사업이 한정적으로 실시되어 일부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회보험적, 자혜적 제도이지

건강권의 소산들이라고 할 수는 없다. 건강권이 국민의 권리로서 정착하려면 수많은 선행조건이 충족해야 할 것 같다. 국력의 부강화와 국민의식의 양양, 정치가의 사명감(복지국가건설의 의욕)의 제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의사법학자들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군소리 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